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「도로법」상 과태료 중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「도로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대상(안 제3조제1항 제1호 및 2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

- 조례 제3조제1항제1호
 ·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→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
- 조례 제3조제1항제2호
 ·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→ 도로점용허가를받지 아니 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

○「도로법」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대상(안 제3조제1항제3호및 4호) 삭제

- 조례 제3조제1항제3호
 ·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, 수리,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
- 조례 제3조제1항제4호
 ·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도로법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10. 6. ~ 2016. 10. 26.)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도로법」 제2조”를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도로법」 제40조”를 “법 제61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”를 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
2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

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ㅈ	
제2조(용어의정의)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「도로법」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.	제2조(용어의정의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----------.
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「도로법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	② ---------- 법 제61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3조(과태료)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	제3조(과태료) ① ------ 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	1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
2.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	2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
3.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, 수리,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	<삭 제>
4.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	<삭 제>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